

# 2025 하나퀸즈컵(HANA QUEENS CUP) 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 대회 명칭은 영문 『2025 HANA QUEENS CUP』, 국문 『2025 하나퀸즈컵』이라 한다.

### 제 2조 (주최 및 주관)

① 주최 및 주관 : 대전하나시티즌

### 제 3조 (일정 및 장소)

- ① 대회 기간은 2025년 5월 17일 개최한다.
- ② 대회 장소는 안영생활체육공원 1구장에서 개최한다.

### 제 4조 (참가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회는 참가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참가자격                    | 참가제한                  |
|-----|-------------------------|-----------------------|
| 컵대회 | 만 19세 이상의 여성(2006년생 이상) | 엘리트 등록 경력이 없는 순수 아마추어 |

② 제4조 ①항에 의거한 자격은 아래와 같다.

- 1. 모집 팀 수는 총 16팀이다.
- 2. 팀별 등록 인원은 최소 6명 이상, 최대 12명 이하이다.
- 3. 사전에 팀별로 취합한 엘리트 선수 등록 경력 자료를 통해 엘리트 출신 선수의 참가를 제한한다.  
(엘리트 선수 출신 기준 = Join KFA 소속내역 → 구분 → '전문' 또는 '1종클럽'으로 표기된 선수)  
※ 대회 당일 선수검인 시 본인 확인 서류 :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제 5조 (참가 신청 - 팀 등록, 선수 등록 및 대회 접수, 조 추첨)

- ① 모든 참가팀은 주최측에서 제공한 참가 신청서 양식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조 추첨 및 대표자회의는 (일정/시간미정, 추후 대표자를 통해 공지) 대전월드컵경기장 1층 미디어실에서 진행되며, 각 팀 대표자(선수 또는 코치진) 최소 1명은 필수로 참석하여야 한다.

### 제 6조 (대회의 취소)

-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최 측에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  
예시) 호우경보 / 태풍 및 기타 상황에 따라 대회 취소 가능

## 제 2 장 경기 일반

### 제 8조 (공식 사용구)

본 대회 공식 사용구는 셀렉트 슈퍼 TB풋살공을 사용한다. (본 대회 후원사 공인구)

### 제 9조 (경기장)

본 대회의 경기장 규격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기장의 크기는 40m × 20m이다.
- ② 페널티마크는 양 골 포스트 사이 중간에서 6m 떨어진 지점에 표시한다.

### 제 10조 (경기 규칙 - 별도첨부 확인)

본 대회는 한국풋살연맹의 경기규칙 및 규정을 적용하되, 이하 기술할 규칙 및 리그 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제 11조 (대진 및 경기 방식)

- ① 본 대회의 경기 방식과 대진은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 ② 경기 인원은 6 vs 6 경기로 진행한다.
- ③ 경기 일정은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④ 본 대회는 조별리그 후 토너먼트로 치른다.  
가. 16개 참가팀을 4팀씩 4개조로 편성하여 풀리그 방식으로 조별리그 2라운드를 진행한다.  
나.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 ⑤ 8강 대진은 사전에 시드 배정을 할 수 있다. (사전공지 확인)

### 제 12조 (경기 시간)

- ① 경기 시간은 단판 15분으로 진행한다.

### 제 13조 (승점 및 승자 결정 방식)

- ① 본 대회의 승점 및 승자 결정 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② 조별 리그의 경우
  1. 무승부 시 경기를 종료한다.
  2. 승점은 『승 3점,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3. 순위 결정은 『승점-승자승-다득점-득실차-추첨』순으로 한다.  
※ 득실차란, 해당 팀의 조별 예선 경기 전체에서 발생한 골득실을 뜻한다.
  4. 추첨은 팀 대표자가 해야 하며,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5. 팀 대표자가 불참한 팀의 경우에는 최후 순위로 추첨되지 않은 빈자리에 자동 배정된다.
  6. 팀 대표자 미참석인 팀이 2팀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순으로 빈자리에 순서대로 자동 배정된다.
- ③ 본선 토너먼트의 경우
  1. 무승부 시 승부차기를 진행한다.
  2. 승부차기는 5명으로 하며 경기의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다음 키커의 순번에 따라 킥을 한다.

### 제 14조 (경기 심판)

- ① 매 경기 주심 1명과 대기심 1명이 경기를 진행한다.
- ② 대기심은 경기장 출입문에 위치하며, 다음 경기 선수와 장비 검인을 경기 시작 5분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③ 대기심은 경기종료 시 경기 기록을 대회운영본부에 전달해야 한다.

### 제 15조 (지도 행위)

- ① 경기장 안에 입장하는 지도자는 팀당 1명으로 제한한다.
- ② 해당 팀 경기 중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하다.

## 제 3 장 선 수

### 제 16조 (선수 검인)

- ① 선수 검인은 대회운영본부에서 진행한다.
- ② 선수 검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검인 대상이 되는 선수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선수 검인을 실시한다.
  - 2. 검인 방법은 대회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 3. 검인이 완료된 선수에게는 대회운영본부에서 표식을 부여한다.
- ③ 선수 검인 표식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제 17조 (선수의 출전 및 장비)

-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전하는 소속팀 참가팀 명단에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 ②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대기심에게 경기에 출전하는 선발선수와 교체선수의 명단을 확인받고 장비 검사를 받는다.
- ③ 각 팀 별 출전하는 선수 중 한 명은 반드시 골키퍼이어야 한다.
- ④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팀별로 동일한 유니폼 상·하의를 착용하거나 동일한 색상의 팀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상의 등번호 필수)**
- ⑤ 다만, 팀에서 제공한 조끼가 기존 유니폼 색상과 차이 나거나 준비하지 못한 경우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BIB을 착용한다.
- ⑥ 홈팀과 원정팀의 색상이 같은 계열일 경우 원정팀이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BIB을 착용한다.  
(⑤과 ⑥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홈/원정 구분없이 준비하지 못한 팀이 BIB을 착용하며, 이는 주최측에서 판단한다.)
- ⑦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 ⑧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풋살화를 착용해야 한다.
- ⑨ 심판은 경기 시작 전 선수 장비 검사를 시행한다. 적절하지 못한 장비를 착용한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할 수 있다.
- ⑩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각종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할 수 없다.  
**(네일아트-악세서리부착등 : 상대선수 보호차원에서 부착물 제거 또는 장갑을 끼고 경기에 출전)**  
단, 안경 대신 보호안경(보호고글) 착용은 가능하며, 보호안경 착용으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착용자 본인에게 주어진다.

### 제 18조 (선수 교체)

- ① 교체를 하는 선수는 경기 전에 제출된 참가팀 명단 중에서만 가능하다.
- ② 교체 선수는 교체되는 선수가 지정된 교체라인을 통과 이후 교체 가능하다.
- ④ 교체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 대기 할 수 있다.
- ⑤ 교체되는 순간, 교체 선수는 선수가 되고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된다. 교체된 선수는 그 이후에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⑥ 골키퍼 교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에 출전 중인 선수 또는 교체선수는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는 선수는 바꾸기 전 경기가 중단되어 있는 동안 주심에게 알려야 한다.
2.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는 선수 또는 교체하는 선수는 자신의 등번호가 표시된 골키퍼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별도의 골키퍼 유니폼이 없을 경우 조끼 착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4 장 상 별

### 제 19조 (시상)

- ① 본 대회는 조별 풀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시상을 진행한다.

### 제 20조 (선수 및 팀에 대한 제재)

가. 경기 중 퇴장선수는 다음 1경기 출전금지 (폭력으로 인한 퇴장선수는 전 경기 출전금지)

나. 대회 중 2회의 경고는 퇴장으로 간주(경고는 전경기 누적)

- ① 실격이라 함은 본 대회 모든 경기에 대한 팀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 ② 경기와 관련된 승부조작, 부정선수 출전, 비신사적 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회운영본부는 해당 팀을 실격 처리 할 수 있다.
- ③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복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하여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또는 경기 에 불응하였을 경우, 경기 재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
- ④ 팀 인원 부족(4명 미만)일 경우 해당 팀은 실격으로 처리된다.
- ⑤ 참가 신청서 명단에 없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 발각되었을 경우 그 팀의 모든 경기를 실격으로 처리한다.
- ⑥ 실격 처리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조별리그의 경우
    - 가. 실격팀 발생 시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단,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2. 토너먼트의 경우
    - 가. 실격팀 발생 시 상대팀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 나. 토너먼트에서 실격팀에게 패했다 하더라도 패배한 팀은 소생하지 못한다.
- ⑦ 소속 선수가 부정 선수로 이의 제기를 당할 경우 아래의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은 실격 처리된다.  
또한, 부정선수로 이의제기가 된 경우는 해당 선수가 관련 자료로 소명하여야 한다,  
(예: 선수등록여부 확인-사이트에서 조회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본인 확인 서류 : 사진이 붙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중 택1**
  1. 대회 종료 후 실격 처리가 될 경우 경기 결과는 변동되지 않는다.
- ⑧ 경기 도중 또는 경기 후에 심판 판정에 대하여 항의·무시·폭언·기타 행동 등을 하였을 경우 심판 은 해당 선수에게 경고, 또는 퇴장을 줄 수 있다.
- ⑨ 퇴장 시 해당 선수는 즉각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 ⑩ 대회운영본부는 퇴장 선수의 고의성을 판단해 본 대회 출전 기회를 영구 박탈할 수 있다.
- ⑪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 또는 팀 임원 사이의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하다.
- ⑫ 시상한 팀 중에서 실격팀이 나오더라도 차순위 팀의 순위는 변동되지 않는다.
- ⑬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한다.

### 제 21조 (제소)

- ① 부정선수 출전,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경기에 참여한 팀의 대표자 명의로 이의 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회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자유양식)
  - 1. 조별리그의 경우 조별리그 전체 경기 종료 후 30분까지 제소할 수 있다.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2. 본선 토너먼트의 경우 해당 경기 종료 후 5분 이내로 제소할 수 있다.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3.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회운영본부는 부정선수 출전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② 심판판정에 대한 제소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회운영본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한다.

## 제 5 장 기타 규정

### 제 22조 (선수단 안전 및 응급치료)

-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 ② 대회 당일 구급차 및 응급구조사가 상시 대기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가입한 스포츠공제보험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그 외 추가적인 치료는 해당선수와 팀이 책임진다)
- ③ 주최 측은 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장 내 활동과 관련된 보험 가입을 하고, 참가팀들은 선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경기 출전 시 소속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참가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 23조 (기타 유의 사항)

- ① 경기장 내 흡연 및 음식물 반입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경기에서 퇴장 조치한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② 대회장 내에서 음주 및 소음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금한다.
- ③ 본 대회와 관련 없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회 주최 측 및 운영본부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본 대회는 '교류'와 '친선'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모든 팀은 상호간 보편타당한 배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이 팀원, 지도자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없거나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대회운영본부 및 심판원은 해당 팀을 실격패, 또는 선수 및 지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선수, 지도자 및 팀은 향후 5년간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제 24조 (부칙)

- ① '2025 하나퀀즈컵' 우승팀에겐 대전하나시티즌 구단 대표로 '2025 K리그 퀀컵'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 ② '2025 하나퀀즈컵' 우승팀이 '2025 K리그 퀀컵' 참가를 포기할 시, 참가 자격은 차순위 팀에게 부여된다.
- ③ '2025 하나퀀즈컵' 우승팀 선수 명단에 속한 선수가 '2025 K리그 퀀컵' 타구단 선수 명단에 포함될 시, 해당 우승팀의 '2025 K리그 퀀컵' 참가 자격이 박탈되며 참가 자격은 차순위 팀에게 부여된다.

또한, '2025 하나퀀즈컵' 우승팀, 즉 2025 K리그 퀀컵 참가팀은 아래 규정 사항을 반드시 준비하여야한다.

2025 K리그 퀀컵 (K-WIN CUP) 주요 개정 규정 중

1. 구단 자체 대회 우승 팀 또는 구단 연계 동호인 팀이 출전하는 경우

- 각 팀 및 선수는 아래 표와 같이 각 구단 연고지에 해당하는 시도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팀명                                 | 소속 시도축구협회              |
|------------------------------------|------------------------|
| FC서울, 서울E                          | 서울특별시축구협회              |
| 김포, 부천, 성남, 수원삼성, 수원FC, 안산, 안양, 화성 | 경기도축구협회                |
| 인천                                 | 인천광역시축구협회              |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
| 대전                                 | 대전광역시축구협회, 세종특별자치시축구협회 |
| 대구                                 | 대구광역시축구협회              |
| 울산                                 | 울산광역시축구협회              |
| 부산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
| 광주                                 | 광주광역시축구협회              |
| 충북청주                               | 충청북도축구협회               |
| 충남아산, 천안                           | 충청남도축구협회               |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            |
| 전남                                 | 전라남도축구협회               |
| 포항, 김천                             | 경상북도축구협회               |
| 경남                                 | 경상남도축구협회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

- 공고일 (2025.04.07.) 이후 선수가 타 시도축구협회에서 해당 구단 연고지 소속 시도축구협회로 이적한 경우, 이는 실제 거주지 또는 소속 (학교·직장) 변경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 또는 소속 변경을 입증하기 위한 공식 증빙서류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어야 한다 :

- 재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④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대회운영본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